Policy and Law Report _Vol.31

- 정부 주요정책 및 입법정보 동향 (2020. 4. 13. ~ 4. 17.) -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의 “정책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되는 일일 의안접수현황, 입법예고 현황 및 정부 용역 관련 내용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공공기관, 협회, 기업들의 업무담당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선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중 기업 관련 내용을 주요 산업별(재정/금융/노동/TMT/산업정책/공정거래)로 정리하여 첨부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주요정책 동향

[금감원1] 2020년 은행 감독·검사 방향 발표

2020. 4. 7. 저성장, 저금리에 따른 잠재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은행 감독·검사 방향을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차주 채무상환능력 악화 대비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기업개선계획 이행 실적 점검 등), ② 글로벌 감독기준 도입(바젤3 레버리지 규제 및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 검토, 자본적정성 스트레스테스트 정교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검토 등), ③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새로운 영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규제 개선 검토, ④ 비예금 고위험 상품 판매 및 사후관리 전과정을 규율하는 자율 내부통제기준 도입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은행 부문 감독검사 방향

[금감원2] 2020년 보험부문 업무계획 발표

2020. 4. 7. '안정, 공정, 포용, 혁신'을 핵심기조로 하는 보험감독 기본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IFRS17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보험회사 인프라 점검, ② 공동 재보험 거래 관련 세부 운영기준 마련(위험전가효과 RBC반영, 보험위험 전가 평가기준 보완 등), ③ 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 프로세스 혁신 지원 지속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 보험감독 업무설명회

[참고자료] 2020년도 보험감독업무설명회 검사 파트

[금감원3] 2020년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방향 발표

2020. 4. 10. 자본시장 시스템의 안정 등을 위한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방향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헤지자산 요건 강화, 상품구조 다양화 등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운용업무 개선방안 마련, ② 증권사의 건전성 확보 및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NCR 규제 개정 추진, ③ 자기자본 규모 또는 영위업무 등에 따른 자본규제 차등화 등 신 자본규제체계 도입 준비를 위한 검토방안 마련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년도 업무설명회(금융투자)

[금감원4]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2020. 4. 13. 재무제표 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회계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둔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상장법인 등 18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표본심사 대상 100여사 내외 선정, 혐의심사 50사 내외 추정), ② 상반기 3사, 하반기 8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③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 등 새로운 회계제도 도입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운영계획 발표

[기재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2020. 4. 16.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주요 내용으로 ①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7.6조원 편성(지출 구조조정 3.6조원, 공자기금 지출 축소 2.8조원, 기금재원 활용 1.2조원), ② 지출 구조조정·기금재원활용 등으로 국채 발행 없이 재원 조달, ③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가거도항·미세먼지저감숲의 공사일정 반영 등 세출사업 삭감 등이 있음

[참고자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도자료

[참고자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첨자료

[참고자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1

[참고자료]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포그래픽 2

[과기부]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 마련

2020. 4. 17.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 지침(2판)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 ① 위기상황 종료 후 차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이월을 원칙적 허용, ② 손세정제, 마스크 등은 직접비 중 연구실 운영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직접비 5% 이내인 경우 정산 면제, ③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활동이 단순 지연되는 경우 연구 기간 연장 허용 등이 있음

[참고자료] 코로나19 위기 극복 연구현장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2판) 마련

2. 주요 입법(안) 동향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30609호)]

소상공인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부문에 대한 긴급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근거 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임대인과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인 소상공인의 요건을 정하고,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및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제30613호)]

법률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요건을 정하면서 종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관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해당 내용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옮겨 규정됨에 따라 같은 영에 따른 기관 및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관련 업무 등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요건으로 하려는 것임

3.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 공약 정리(기업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총선공약집(2020. 4. 7. Vol.29에서 기 회람)에는 공약사항들을 5개의 핵심 카테고리(혁신, 공정, 포용, 안전, 평화)로 나열하고 있는바, 이 중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선별하여 주요 산업별(재정/금융/노동/TMT/산업정책/공정거래)로 재정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주요 공약 정리]

법무법인 세종 Public Affairs Team(PA팀)은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실무자 중심의 대관업무 전문팀입니다.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실용성을 갖춘 다수의 정부 부처 및 국회 출신의 실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정부 예산안 집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tacts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02-316-4630
dybaek@shinkim.com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02-316-4432
sbkim@shinkim.com

홍정아
선임외국변호사
02-316-4487
cahong@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02-316-1773
shbang@shinkim.com

노지은
소속변호사
02-316-2573
jeroh@shinkim.com

성재열
소속변호사
02-316-1777
jysung@shinkim.com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